

통 지 서

수 신 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KT 분당사옥 6층)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발 신 인 법무법인 소헌 (KT전국민주동지회)
 담당변호사 신 인 수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2층 (서초동, 은곡빌딩)
 (전화 : 02-525-3981, 팩스 : 02-6925-3949)

이 우편물은 2015-11-09
제 311296000935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제 목 정리해고 단체협약안 철회 요청

1.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3권 보장을 기원합니다.
2. 저희 법무법인은 발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신인을 대리하여 귀 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고 단체협약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3. 귀 조합은 현재 회사와 2015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하여 '단체협약 신설 및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4. 귀 조합이 단체협약에 신설하겠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고, ② 감원시 우선순위는 희망자, 회사 중징계자(업무상 과실 제외), 조합 탈퇴자, 조합징계자, 비조합원 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3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긴박성
2. 감원 인원의 수, 범위

3. 정리기준과 적용방법 및 해당자
 4. 정리해고 해당자에 대한 보호조건(해고예고제, 해고에 대한 보상, 재고용의 특권 등)
 다만, 강원시 우선순위는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자, 회사 중징계자(업무상 과실 제외), 조합 탈퇴자, 조합징계자, 비조합원 순으로 한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그런데 현재 귀 조합이 신설하려는 정리해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최저기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별기준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먼저, 귀 조합이 신설하려는 정리해고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인원 감원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리해고 사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리해고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최저기준에도 못미치므로 위법·무효입니다.

7. 감원 대상자의 선별기준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입니다. 귀 조합이 신설하겠다는 정리해고 조항은 '희망자, 회사 중징계자(업무상 과실 제외), 조합 탈퇴자, 조합징계자, 비조합원' 순으로 강원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과 조합 탈퇴자,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측의 위법 경영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 1순위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 내지 조장할 염려가 있습니다.

8. 이처럼 귀 조합이 신설하려는 정리해고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별기준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법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귀 조합과 집행부



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9. 귀 조합과 임원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2014년 4월 8일자 직권 조인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452호 판결). 그럼에도 귀 조합이 또다시 조합원들의 의사와 권익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도 못치는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더욱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할 것입니다.
10. 이에 발신인은 현재 귀 조합이 추진 중인 정리해고 단협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감사합니다.

2015. 11. 9.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신 인 수

